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20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1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1	2204625	주호영의원	2024. 10. 8.	2024. 11. 14.
2	2208591	한지아의의원	2025. 2. 28.	2025. 8. 18.
3	2209304	위성곤의원	2025. 3. 24.	
4	2210576	백선희의원	2025. 5. 22.	
5	2211651	이수진의의원	2025. 7. 23.	2025. 9. 22.
6	2213352	김선민의의원	2025. 9. 29.	2025. 11. 12.
7	2213978	남인순의원	2025. 11. 6.	2026. 3. 10.
8	2216470	김태선의의원	2026. 1. 30.	
9	2217677	김미애의원	2026. 3. 23.	2026. 9. 11.
10	2217750	남인순의원	2026. 3. 25.	
11	2218331	김남희의원	2026. 4. 14.	
12	2220902	주호영의원	2026. 8. 28.	
13	2221130	김미애의원	2026. 9. 7.	
14	2221145	이만희의원	2026. 9. 8.	
15	2221242	이달희의원	2026. 9. 9.	
16	2221250	김교홍의원	2026. 9. 9.	

나.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2026. 9. 4.)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2호)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2026. 9. 14.).

다.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되, 1번·2번·5번 및 11번의 법률안 4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3번, 4번, 6번부터 10번까지, 12번부터 16번까지 및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2026. 9. 4.)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2호) 등 1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번·2번·5번 및 11번의 법률안 4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함.

□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	상정	소위심사
2209304	위성곤의원	2025. 3. 24.	2025. 8. 18.	2026. 9. 15.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	상정	소위심사
2210576	백선희의원	2025. 5. 22.	2025. 8. 18.	2026. 9. 15.
2213352	김선민의원	2025. 9. 29.	2025. 11. 12.	2026. 9. 15.
2213978	남인순의원	2025. 11. 6.	2026. 3. 10.	2026. 9. 15.
2216470	김태선의원	2026. 1. 30.	2026. 3. 10.	2026. 9. 15.
2217677	김미애의원	2026. 3. 23.	2026. 9. 11.	2026. 9. 15.
2217750	남인순의원	2026. 3. 25.	2026. 9. 11.	2026. 9. 15.
2220902	주호영의원	2026. 8. 28.	2026. 9. 11.	2026. 9. 15.
2221112	서영석의원	2026. 9. 4.	※ 직회부	2026. 9. 15.
2221130	김미애의원	2026. 9. 7.	2026. 9. 11.	2026. 9. 15.
2221145	이만희의원	2026. 9. 8.	2026. 9. 11.	2026. 9. 15.
2221242	이달희의원	2026. 9. 9.	2026. 9. 11.	2026. 9. 15.
2221250	김교홍의원	2026. 9. 9.	2026. 9. 11.	2026. 9. 15.

□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계류하는 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	상정	소위심사
2204625	주호영의원	2024. 10. 8.	2024. 11. 14.	2025. 2. 20.
				2025. 3. 20.
				2026. 9. 15.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	상정	소위심사
2208591	한지아의원	2025. 2. 28.	2025. 8. 18.	2026. 9. 15.
2211651	이수진의원	2025. 7. 23.	2025. 9. 22.	2026. 9. 15.
2218331	김남희의원	2026. 4. 14.	2026. 9. 11.	2026. 9. 15.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동일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
딯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제6항 신설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를 “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하”를 “1명”으로,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1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4개월”을 “27개월”로 한다.

2. 자녀가 2명인 경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제63조, 제68조제1항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

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에 피부양가족(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배우자·자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 금액(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⑥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5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4조(외국인 수급권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령연금·장애
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령연금·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
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
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
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요건을 새로 충족하게 된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1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
한 노령연금·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그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을 취득한 날 이후 급여분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
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u> 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u>복무기간</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u>산입된</u>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u>산입되는</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신 설>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 ④ (생략)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생략)

<신 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1. -----1명-----
12개월

2. 자녀가 2명인 경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
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3. -----

-----27개월-----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
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제63조, 제68조제1항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에 피부양가족(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배우자·자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 금액(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② ~ ④ (생략)

<신설>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
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
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
가족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⑥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
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
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
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
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
민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⑤ (생 략)	<u>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u> <u>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외국인</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